

14.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0년 4월 9일
- 발의의원 : 하병문, 김성태, 박갑상, 배지숙, 이태손, 임태상, 전경원, 황순자, 홍인표 의원
- 회부일자 : 2020년 4월 13일
- 상정일자 :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1차 경제환경위원회(2020년 4월 22일),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하병문 의원)

- 제안이유
 - 하수도사업에 장래 소요될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잉여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회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
 - 기금의 설치 목적, 계정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)
 - 기금의 조성, 용도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)
 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그 기능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)
 -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와 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(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)
 -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충호)

□ 제정취지

- 본 제정 조례안은 하수도사업 잉여재원 중 일부를 회전기금으로 조성하여 향후 소요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열악한 대구시 재원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적법성 여부

-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

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회전기금의 목적과 계정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
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기금 조성 시 재원과 그 용도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기능, 회의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,

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및 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
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음.

□ 검토결과

-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결산기준 2,570억원, 2019년 3,600억원으로 잉여금의 대부분을 대구은행 정기예금(만기이율 1.40 ~ 1.98% 정도)으로 예치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낮은 반면, 대구시에서는 지방채 약 1조 7,090억원(2019년 연말기준, 평균이율 2.2%)을 발행하여 매년 이자 납부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.
- 본 제정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* 중 일부를 회전기금**으로 조성하여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열악해진 대구시 재원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고 장래 하수도사업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.

*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: 약 3,600억원(2019년 결산기준)

** 회전기금 : 지방공기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할 수 있음. 다만, 사업 예산 및 자본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개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함.

※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연 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금 액	63,600	130,361	190,856	257,277	359,948

· 금액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임(순세계잉여금 = 수입-지출-이월금)

⇒ 1년 단위 정기예금(약 100억원 단위)으로 관리하고 있음.

(2020년 만기이자율 1.40~1.98% 정도)

- 다만,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전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드물고(13개 지방자치단체 - 하수도 1, 상수도 11, 공영개발사업 1) 특히,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회전기금을 조성하는 만큼, 소관부서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, 기금의 규모와 운용방법 결정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전기금이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붙임 1**타 광역시 순세계잉여금 현황 및 잉여자원 운영현황****□ 타 광역시 순세계잉여금 현황 및 잉여자원 운영현황**

(단위 : 백만원 / 결산기준)

광역시	순세계잉여금 현황		요금 현실화율		잉여자원 운영현황 (예비비 편성)
	2017년	2018년	2017년	2018년	
부산	15,808	48,218	74.01%	74.75%	1개월 ~ 6개월 단위 정기예금
대구	190,856	257,277	87.52%	90.72%	1년 단위 정기예금
인천	16,309	39,267	85.04%	87.77%	3개월 ~ 6개월 단위 정기예금
광주	45,059	48,328	65.80%	63.95%	6개월 ~ 1년 단위 정기예금
대전	40,601	57,310	74.11%	98.92%	3개월 ~ 1년 단위 정기예금
울산	32,545	24,862	60.71%	78.21%	6개월 ~ 1년 단위 정기예금 & MMDA*

* MMDA : 수시입출금식 저축예금

※ 6개 광역시 모두 기금 조성 내역은 없으며, 잉여금은 1년 미만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.

붙임 2**전국 회전기금 설치현황****□ 전국 회전기금 설치현황**

연번	자치단체	관련회계	법규명
1	경기도 구리시	하수도사업	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
2	강원도 강릉시	상수도사업	강릉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운영조례
3	강원도 삼척시	상수도사업	삼척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
4	강원도 속초시	상수도사업	속초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
5	경기도 시흥시	공영개발사업	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6	경기도 시흥시	상수도사업	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7	강원도 양양군	수도사업	양양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8	강원도 원주시	상수도사업	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9	강원도 인제군	수도사업	인제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10	강원도 정선군	상수도사업	정선군 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
11	강원도 철원군	수도사업	철원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12	강원도 태백시	상수도사업	태백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
13	강원도 홍천군	상수도사업	홍천군 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○ 안 제4조제3호를 볼 때, 출자도 가능하다면 원금 손실의 문제는 없는지?	○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투자도 가능하나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.
○ 안 제12조 본문 중 조례명칭 개정예 따라 「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」을 「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한지?	○ 동의함.

5. 토론요지

-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안 제12조의 본문 중 「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」을 「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에 동의함.

6. 수정안 요지

- 안 제12조의 본문 중 「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」을 「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으로 한다.

7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(출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해당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해당 없음.

10. 첨부서류

- 위원회 수정안 : [붙임1]

[붙임1] : 위원회 수정안

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

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 본문 중 “「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」”을 “「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 「 <u>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</u> 」을 준용한다.	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 「 <u>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 」을 준용한다.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9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계정설치)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
2. 해당 연도 예정이익 잉여금
3.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②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
2.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
3. 기타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
4.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

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
 - 1. 당연직 위원은 녹색환경국장, 예산담당관이 된다.
 - 2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
-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기금적립, 자금의 용자 및 출자에 관한 사항
- 2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- 3.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
- 4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)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기금의 관리공무원)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하수도 업무담당 과장
2. 기금출납원 :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담당 사무관

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12월31일까지로 한다.

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기금관련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